■ 민족문화연구 제94호(2022.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633-671.
http://doi.org/10.17948/kcs.2022..94.633

북한의 문화재 보호관리기관 연구*
—'민족유산보호국'의 변천과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남보라(南寶羅)**

목 차

1. 서론
2. 중앙 문화재 보호관리조직의 확립과 변천
3. 문화재 보호관리의 구체화・제도화
4. 문화재 보호관리의 고도화 추구: 문화재 국제교류
5. 결론

국문초록

한반도의 문화재는 남과 북이 같은 역사를 공유했다는 실증의 산물로, 북한이 펼치는 문화재 보호관리정책은 북한만의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문화재를 함께 향유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꼭 필요하다.

본 논문은 북한의 문화재 보호관리기관인 '민족유산보호국'의 변천에 집중하여 중앙 문화재 보호관리조직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문화재 보호관리기관을 조직하였고, 과도기를 거쳐 1970년대 '문화보존총국'을 수립하여 중앙 문화재 보호관리기관을 확립하였다. 관리 기관 명칭이 자주 변경되었지만 그 업무는 구체화되고 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문화재 보호 대상뿐만 아니라 문화재

* 이 논문은 2021년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수료.

수집 및 평가와 등록, 보호 관리 등과 같은 기본 업무 역시 법으로 뒷받침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0년 전후부터 최근까지 유네스코 등록유산 등재를 위한 활동과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이어진 프랑스와 독일 등과 같은 유럽국가와의 교류 및 남북 교류를 통한 북한 문화재 '소개선전'사업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교류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선진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80년대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온 문화재 국제교류라는 외부동인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북한은 문화재 교류를 위해 '민족유산보호국'을 필두로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최근까지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북한 문화재, 민족유산보호국,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조선민족유산보존사, 민족유산보호법.

1. 서론

한반도의 문화재는[1] 남과 북이 같은 역사를 공유했다는 실증의 산물로, 문화재를 통해 남과 북은 하나였던 과거를 살피고 현재를 함께하며 미래를 같이 도모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를 바탕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주민이 느끼고 있는 거리감을 좁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협력은 현재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이 교류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북한의 문화재 보호관리기관인 '민족유산보호국'은 최근 10년 사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펼치는 문화재 보호관리정책은 북한만의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문화재를 함께 향유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꼭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정리되고 있

1) 우리는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과거의 문화적 산물'인 문화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현 시대에서 선택된 기억이 사람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형성되는 사회적 과정'으로서 문화유산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이현경·손오달·이나연,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한국의 문화재 개념 및 역할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비판」, 『문화정책논총』 3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23면).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남과 북이 비슷하게 사용하는 문화재 관련 용어의 이해를 돕고 구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문화재'를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자연문화재라는 용어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시행 2021. 2. 25.)」의 제12조(하부조직)의 나오는 조직명인 '자연문화재연구실'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지 못한 북한의 문화재 보호관리기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변화하는 북한의 문화재 보호관리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연구는 지금까지 북한 문화재 보호관리와 관련한 연구는 북한 문화재 현황을 소개하면서 그 관리에 대하여 논하는 방식을 취하거나,[2] 1994년 부문법으로 「문화유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문화재 보호관리법제에 대해 분석하고 소개하는 형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3] 또한, 이런 내용을 토대로 남북문화재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성과도 있으며,[4]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의 통합된 문화재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연구도 이루어졌다.[5] '비물질유산'의 법적 보호가 확인된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 제정 이후에는 무형문화재분야와 무형문화재남북교류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6]

---

2) 『北韓 遺物·遺蹟 現況』, 中央情報部, 1973 ; 編輯部, 「資料 北韓所在 文化財一覽」, 『北韓』 82, 북한연구소, 1978, 192-199면 ; 楊昌錫·任孝宰,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國土統一院調査研究室, 1984 ; 文化財管理局 編, 『北韓文化財實態와 現況』, 文化財管理局, 1985.

3) 朴相哲·金昌奎, 『北韓의 文化財保護關係法制』, 한국법제연구원, 1995 ; 鄭在鑣, 「남북한 문화재관리정책의 비교」, 『미술사학』 3, 한국미술사교육학회, 1989, 8-54면; 김응환·전영선,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연구—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법령을 중심으로—」, 『민족학연구』 2, 한국민족학회, 1997, 179-219면; 崔鐘庫,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남한의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북한법연구』 1, 북한법연구회, 1997, 60-70면 ; 남궁승태, 「남북 통일을 대비한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2, 195-227면 ; 지병목, 「「문화유물보호법」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유산」, 『문화재』 3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39-67면 ; 남보라·서순복,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법학논총』 21-3, 조선대 법학연구원, 2014, 191-224면.

4) 오양열,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북한연구』 6, 명지대 북한연구소, 2003, 161-199면 ; 하문식, 「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남북 교류」, 『정신문화연구』 3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279-305면 ;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통일인문학』 77,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019, 363-395면.

5) 이규창, 「북한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연구—북한 문화유물보호법과 남한 문화재보호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0년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0, 117-154면 ; 경북대 산학협력단, 『남북한 문화재관련 법제통합연구』, 법제처, 2013.

6) 신현욱·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한국민요학』 41, 한국민요학회, 2014, 127-151면 ; 정은찬·문철훈, 「남북 문화유산의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문화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1, 중원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91-113면 ; 송민선,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 『문화재』 50-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94-115면 ; 이우영·남보라, 「새로운 접촉지대의 모색, 무형문화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씨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2-3, 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 2019, 174-199면 ; 조우찬, 「북한 김정은 시대 문화재정책의 특징: 무형문화

하지만 북한의 문화재 보호관리기관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통치이념을 중심으로 북한의 문화재 보호관리정책을 살피는 연구의 일부로 기관을 검토한 사례는 있지만 시대적 배경과 법제에 연구의 중심이 있어 기관에 대한 부분은 소략하다.[7] 한편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와 법제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의 유적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의 문화재 보호관리 현황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시도가 있었으나 유형문화재에 한정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8]

따라서 본 연구는 해방 이후 북한 정권 수립 시기부터 시작된 북한의 문화재 보호관리기관 변화에 집중하여 관련 문헌[9] 분석을 통해 중앙 문화재 보호관리조직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민족유산보호국'으로의 변천과정에서 보인 문화재 보호관리의 제도화·구체화되는 경향과 문화재 국제교류를 정리하여 북한 문화재 보호관리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2. 중앙 문화재 보호관리조직의 확립과 변천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 내의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손상되어 문화재의 보수와 복원을 위해 문화재 실태 파악이 필요하였다. 더불어 '민족문화 향상'을 목표로 한 유적의 발굴조사와 전후 복구 과정에서 확인된

유산의 부각과 지향성을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논문집』, 통일부, 2019 ; 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동향 연구」, 『무형유산』 7, 국립무형유산원, 2019, 6-29면; 박영정, 「북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양상—국악 분야를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 43, 국립국악원, 2021, 43-70면.

7) 김유진, 「북한의 통치이념 변화에 따른 문화유산정책 연구」, 한국전통문화대 대학원 문화유산학과 문화재법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2016.

8) 김현우·이선복,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 연구—지방의 유적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재』 52-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4-17면.

9) 문헌 분석 대상은 '정기성'을 갖고 있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등을 비롯하여, 북한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문화재 관련 선전이 잦은 '조선의 오늘,' '서광(현재 폐쇄)'과 같은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와 2020년에 문을 연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의 홈페이지도 포함하였다. 더불어 김정은 집권 이후 발표된 과거 북한의 문화재 정책을 정리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같은 도서나 계간지인 『민족유산』(2019년부터 『민족문화유산』에서 『민족유산』으로 제호 변경)에 수록된 글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였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4월 29일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과 서기장 강량욱의 명의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이하 보존령)」과 동령의 「시행규칙」과 「시행수속」을 반포하여 문화재 보호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10] 북한은 이후 「보존령」을 토대로 '민족문화 향상 및 고대 문화의 보존・수리・발굴・연구'를 담당할 문화재 보호관리조직을 세우고 각 지역에 '력사박물관'을 설립하였다.[11]

1946년 12월 1일에 '평양시박물관'의 창설을 시작으로 총괄적으로 문화재 보호관리를 담당할 기관 수립을 추진하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선전부'는 1946년 12월 12일 제1회 '북조선 군중문화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후 발표한 결정서에서[12] '각 도 인민위원회는 1947년 1월까지 1개씩의 간이박물관 창설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실천할 것'을 건의하였고, '력사가 고고학자 기타 전문가 중심으로 적당한 기관을 조직하여 고대문화의 보존 수리 발굴 연구하게 할 것'을 '교육국'에 건의하였다. 1947년에 각 도별로 '고적보존위원회'가 설치되었고,[13] 다음 해인 1948년 2월 29일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119호'로 '북조선고적보존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14] 사무소가 교육부 내에서 설치되었다.[15] '북조선고적보존위원회'의 뚜렷한 활동은 확인되지 않으나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가 조직되기 전까지 유지되었을

10) 이 법령은 일제강점기였던 1933년 8월 9일에 조선총독부제령 제6호로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과 동령의 「시행규칙」과 「시행수속」의 내용을 수정하여 만든 것이다. '조선총독'과 같은 용어나 소유와 관련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사회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조문은 변경・축약 혹은 삭제하였다.

11) 『朝鮮中央年鑑-1949年版-』, 朝鮮中央通信社, 1949, 137면.

12) 「정치 경제 진로에 발 맞춰 문화적으로 개척 로력」, 『로동신문』, 1946. 12. 25.; 김광운,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7(1946.11.29~1946.12.31)』.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 2018, 578-579면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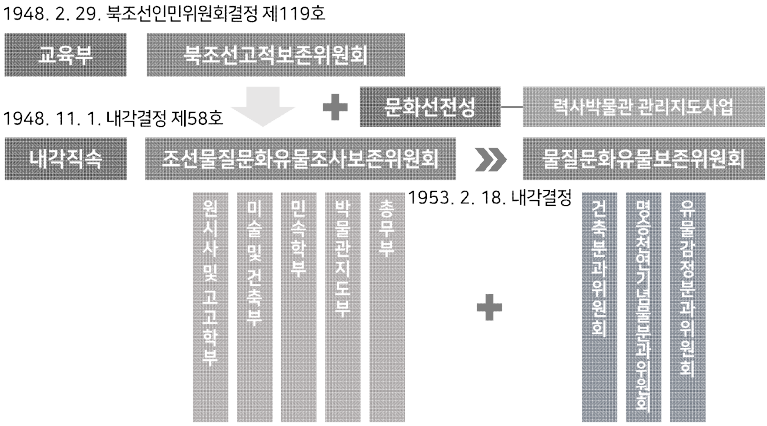
13) 「찬란한 조선민족 문화 예술을 보존 평남도에 보존회 결성」, 『로동신문』, 1947. 1. 13.; 「博物舘 圖書舘 및 古蹟保存事業의 槪觀」, 『旬刊北朝鮮通信』 第五號 九月上旬號, 1947, 14면.

14)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제 119호 북조선중앙고적보존위원회조직에 관한 결정서」, 『法令公報』 47, 北朝鮮人民委員會, 8-9면, 1948 ; 국립중앙도서관 해외한국관련기록물 "SA 2005 2/20 법령공보(1947-1948년)"에서 재인용(https://www.nl.go.kr/; 2022. 1. 5. 검색).

15) 『朝鮮中央年鑑-1949年版-』, 137면.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북한의 중앙 문화재 보호관리기관 변천(1948년~1950년대 초)



이후, 1948년 11월 1일 내각 결정 제58호 「조선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에 의하여 내각직속으로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문화선전성'에서 담당하던 '력사박물관의 관리지도사업'까지 이관 받아 문화재 보호관리조직의 기틀을 세웠다.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는 총 5개의 부서로 구성되었다(〈그림 1〉 참조).[16] 또한, 「보존령」에서 다루고 있던 '보물·고적'과 '명승·천연기념물'의 관리 가운데 '명승'과 '천연기념물'에 대한 사업을 '각도 및 평양특별시 인민위원회'로 이관하였고, 이에 대한 단속의 책임을 '내무상'이 지도록 하였다. 문화재 보호관리가 이원화된 후, 1949년 8월 2일 내각 결정 제110호로 제정된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에[17] 따라 '물질문화유물'을 관리하였고 '명승'과 '천연기

16)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 『문화유물』 1, 1949,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 128면.
17) 「물질문화유물 보존에 관한 규정」, 『문화유물』 1,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 1949.

념물'에 대한 관리는 「보존령」에 존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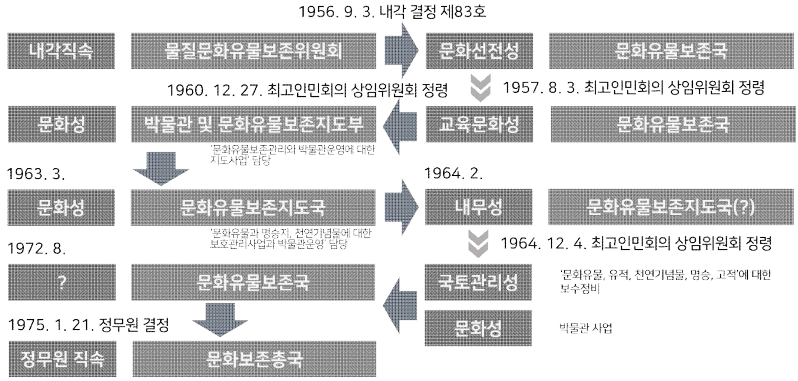
6.25전쟁이 막바지에 달했을 무렵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는 1953년 2월 18일 내각결정으로 '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로 개정하고 그 규정과 기구 정원을 충원하여[18] 전후 복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화재 보호관리사업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이 개정을 통해 '건축·명승천연기념물·유물감정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였다(〈그림 1〉 참조).[19] 이듬해인 1954년에는 내각 지시 제23호에 의해 각 도 및 특별시들과 필요한 시·군에 '문화유물보존위원회(겸임제)'를 조직하였고, 1954년 말을 기준으로 유적·유물 및 천연기념물 소재지에 설치한 관리 위원회 265개소를 통하여 '보존관리의 행정적 체계를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비'하였다.[20]

이후, 1956년 9월 3일 내각 결정 제83호로 내각 직속의 '물질 문화 유물 보존 위원회'를 '문화 선전성'으로 편입하여 '문화 유물 보존국'으로 개편하였으며, '문화 유물 보존국' 산하에 '국립 중앙 력사 박물관과 각 도의 국립 력사 박물관 및 묘향산 특수 박물관'이 속하게 되었다.[21] 이후, 내각 조직의 개편에 따라 상급기관과 문화재 보호관리기관명이 변경되었다(〈그림 2〉 참조).[22]

---

18) 「조선 물질 문화 유물 조사 보존 위원회를 개편」, 『로동신문』, 1953. 3. 4.
19) 조선 중앙 년감 편집 위원회, 『조선중앙년감(1956년판)』, 국제생활사, 1956, 134면.
20) 「유적 유물 및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 사업을 강화하자」, 『로동신문』, 1955. 4. 6.
21) 조선 중앙 년감 편집 위원회, 『조선중앙년감(1957년판)』, 조선 중앙 통신사, 1957, 109-110면.
22) 1957년 8월 3일 교육성과 문화 선전성을 통합하여 교육 문화성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문화유물 보존국'도 '교육 문화성'으로 편입되었다. 1960년 12월 27일 교육 문화성을 폐지하고 '보통교육성'과 '문화성'을 설치하게 되어 '문화성'으로 편입되면서 '박물관 및 문화유물보존지도부'로 조직이 변경되었고 '문화유물보존관리와 박물관운영에 대한 지도사업'을 추진하였다. 1963년 3월에 문화성 '문화유물보존지도국'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문화유물과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관리사업과 박물관운영'을 담당하였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 문화성 및 지방 경리성을 설치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건설성을 건설 건재 공업성으로 개정함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7. 8. 6.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교육 문화성을 폐지하고 보통 교육성과 문화성을 설치함에 관하여」, 『로동신문』, 1960. 12. 28.; 김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200면 참조).

〈그림 2〉 북한의 중앙 문화재 보호관리기관 변천(1950년대 중반~1970년대)



1960년대 초 '문화성'에서 진행하던 '문화유물보존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 1964년 2월에 내무성으로 그 관리사업이 넘어가게 되었고, 각 도와 시에 '유물보존사업소'를 설치하였다.[23] 1964년 12월 4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으로 '내무성'을 '국토 관리성'으로 개칭하면서 '국토 관리성'이 문화재 보호관리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공개된 자료 내에서 정확한 기관명을 파악하기 어렵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국토 관리성'에서 '문화유물, 유적, 천연기념물, 명승, 고적'에 대한 보수정비를 맡아하였고[24] '박물관 사업'은 '문화성'에서 담당하는[25] 이원화된 구조로 추정된다.

23) 김정일이 1964년 9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인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수령님께서는 지난 2월 문화유물보존사업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문화성이 맡아 지도하던 문화유물에 대한 관리사업을 내무성이 맡아하도록 하시였으며 최근에는 도, 시들에 유물보존사업소를 내오는 국가적조치까지 취하여주시였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김정일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전통에 대하여』(2판),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47-55면.)

24) 「나라의 귀중한 문화 재보들을 더 잘 관리 보존하기 위한 대책 강구」, 『로동신문』, 1966. 2. 4.

25) 1966년 5월 15일자 『로동신문』의 기사인 「1만 2천여 점의 문화 유물을 발굴 각지 박물관에서」에서 '문화성 산하 각지 박물관'으로 명시한 부분이 있다. 다만, '내무성'으로 박물관 사업도 이관되었다가 다시 '문화성'으로 넘어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문화재 보호관리사업’과 ‘박물관 사업’이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된 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1972년 8월에는 ‘문화유물보존국’에서 통합하여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26] 이후 ‘문화유물보존국’은 1974년 10월에 ‘문화보존총국’으로 개편되었고[27] 1975년 1월 21일 정무원 결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보존총국에 관한 규정을 승인할데 대하여」를 채택하여 ‘문화보존총국’은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으로 정무원의 지도하에 문화재 보호관리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28] ‘문화보존총국’으로 개편되면서 ‘각 도, 시, 군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당시)들이 수행하는 문화유물보존사업과 중앙과 지방의 력사박물관들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실현하였고, 각 지방에서 진행하는 ‘문화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도 ‘문화보존총국’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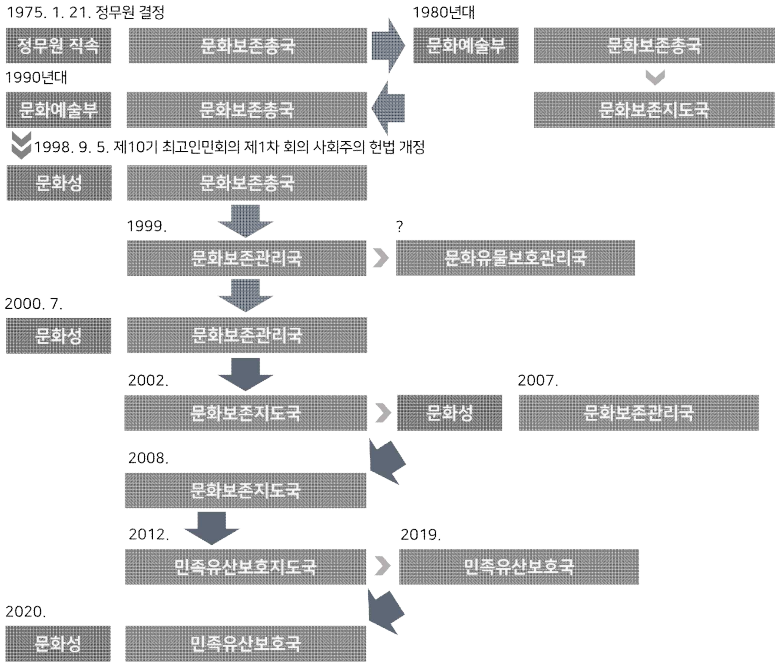
‘문화보존총국’의 수립은 북한이 문화재 보호관리에서 과도기를 정리하고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문화재 보호관리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졌다. 1976년 2월 5일 정무원 결정으로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이 채택되면서 1949년의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과 「각종 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할데 대하여」가 효력을 상실하여 하나의 규정으로 정리되었다.[29]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보존총국’은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문화예술부’에 소속되었다는 언급이 있으며,[30] 1980년대 진행된 문화재 보호관리사업에서 언급되는 기관은 ‘문화보존지도국’과 ‘문화유물보존지도국’이 있다(〈그림 3〉 참조).[31] ‘문화보존총국’에서 ‘문화보존지도국’으로 기관명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문화예술부’에 소속되었지만 독자적으로 문화재 보호관리사업을 수행하는

26) 김현, 앞의 책, 200-201면.
27) 같은 책, 201면.
28) 같은 책, 201-202면.
29) 독고철남,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16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8면.
30) 김현, 앞의 책, 202면.
31) 같은 책, 93면・98-99면.

기관으로 추정된다.

〈그림 3〉 북한의 중앙 문화재 보호관리기관 변천(1980년대~현재)



1990년대 들어서 '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이 다시 등장하였다.[32] '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의 주된 사업은 '력사유적'과 '력사유물'의 수집 및 보존과 보호사업, 복구·개건, 소개·선전 등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며, 문화재 보호관리에 있어 '전군중적 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으로 자리하였다.

'문화보존총국'이라는 명칭은 1998년까지 나타나며, 그 이듬해인 1999년에 '문화보존관리국'으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승지 및 천연기념

32) 「법규해설 력사 유적과 유물 보존에 관한 규정 (1), (2)」, 『민주조선』, 1992. 1. 31.·2. 4.;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력사 유적과 유물 보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30돐 기념연구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1994. 9. 16.

물의 보호관리사업'에 대한 설명에서 2000년에 '문화성 문화유물보호관리국'에서 종전과 같이 '문화보존관리국'으로 명칭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33] 따라서 1999년쯤 '문화보존관리국'으로 변경된 뒤 1999년과 2000년 사이 '문화유물보호관리국'이 되었다가 '국토환경보호부문에서 맡아보고 있던 명승지 관리와 건설, 천연기념물보호관리사업기능'을 이관 받아 다시 '문화보존관리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보존관리국'으로 기관명이 변경된 지 약 2년 만에 '문화보존지도국'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였고,[34] 이유를 알 수 없지만 2007년에 잠시 '문화성 문화보존관리국'이 되었다가[35] 바로 그 이듬해인 2008년에 다시 '문화보존지도국'이 되었다.[36] 2000년대 '문화보존지도국'과 '문화보존관리국,' '문화보존지도국'을 오가던 기관명은 북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부간 위원회'에 제출한 '조선민요《아리랑》'의 등재신청서를 통해 '민족유산보호지도국'으로 변경된 것이 2012년에 확인되었다.[37] 약 8년간 존속하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2019년 11월부터 '민족유산보호국'으로 불리고 있다.[38]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등장 이전까지 중앙 문화재 보호관리기관의 상위 지도기관은 '문화성'과 내각을 오갔을 것으로 보이며,[39]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내각'의 지도아래 문화재 보호관리사업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33) 리상일,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보호관리사업을 잘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18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7면.

34) 김현, 앞의 책, 145면; 「동명왕출생 2300돐기념 고구려력사와 관련한 사진 및 유물, 민속자료 전시회 개막」, 『로동신문』, 2003. 5. 14.; 「동명왕출생 2300돐기념 전국고구려력사학술발표회 진행」, 『로동신문』, 2003. 5. 14.

35) 「민족문화유적들을 훌륭히 보수복원」, 『로동신문』, 2007. 8. 9.; 「가을철문화유적관리사업 활발」, 『로동신문』, 2007. 11. 12.

36) 「력사유적들을 훌륭히 보수」, 『로동신문』, 2008. 5. 28.

37) 조선민요《아리랑》 등재신청서, http://ich.unesco.org(2021. 9. 25. 검색).

38) 「발해의 력사와 문화에 관한 학술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2019. 11. 8.; 「가치있는 력사유물에 비낀 순결한 애국심《덕수리씨세보》를 나라에 기증한 리연희녀성의 애국적소행을 두고」, 『로동신문』, 2019. 11. 24.

39) 「민족문화유적들을 훌륭히 보수복원」, 『로동신문』, 2007. 8. 9.; 「문화유적애호월간사업에 적극 참가하자」, 『로동신문』, 2008. 4. 6.; 「명산과 명승지들을 통한 애국주의교양 강화」, 『로동신문』, 2008. 11. 28.

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하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서도[40]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 문화성 산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 ‘문화성 민족유산보호국’이 언급되었으며,[41] ‘평양랭면풍습’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제출한 등재신청서에도 명시되어있다.[42] 문화성으로 편입된 이유는 밝혀진 것이 없으나 이례적으로 문화재 보호관리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를 언급한 2019년 10월 24일자 로동신문 기사나[43] 2020년 ‘조선옷차림풍습’이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것을 볼 때 문책성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음악·미술·무용·체육·공예 등 여러 영역에 걸쳐있는 ‘비물질유산’의 관리와 2018년 「민족유산보호법」의 ‘수정보충’으로[44] ‘자연유산’ 관리까지 포괄하면서 여러 연계단위와 협업을 위해 문화성에 편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잦은 상위부처의 변동 및 기관명 변경과 제한된 자료로 인해 기관 변천상만 일부 재구성할 수 있었다(〈그림 1, 2, 3〉 참조). 또한, ‘조직체계’도 같은 이유로 현존하는 ‘민족유산보호국’에 대해서만 북한의 문헌과 신문기사, 유네스코에 제출한 자료, 과거 북한의 전화번호책,[45] 통일부 인명록[46] 등을 종합하여 〈그림 4〉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47]

---

40) 조선민요《아리랑》 등재신청서; 김치담그기풍습 등재신청서; 조선씨름 등재신청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씨름 등재신청서(재신청); 조선옷차림풍습 등재신청서, http://ich.unesco.org(2021. 9. 25. 검색).

41)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갈 불같은 의지」, 『로동신문』, 2020년 6월 3일.

42) 평양랭면풍습 등재신청서, http://ich.unesco.org(2021. 9. 25. 검색).

43)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한다」, 『로동신문』, 2019. 1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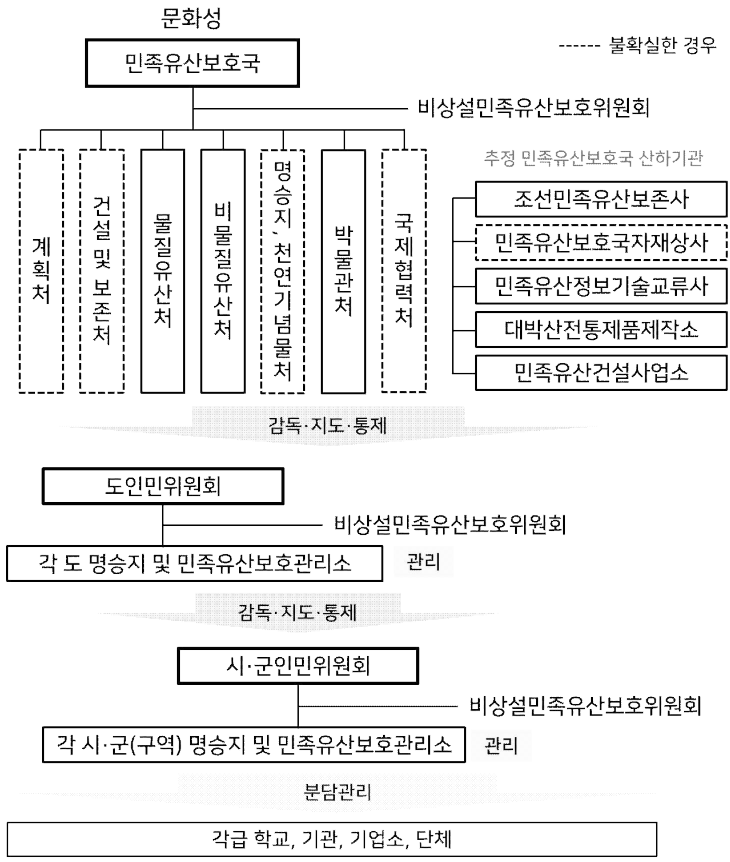
44) 북한의 문화재 보호관리 법제의 유형과 변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보라, 「북한 민족유산의 유형과 법제」, 『북한의 문화·자연유산과 남북교류협력 이해하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1-35면’ 참조.

45) 『전화번호책』, 체신청, 발행년불명, 97면; 『전화번호책』, 체신청, 2002, 96-97면.

46)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 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2020, 77면.

47) 〈그림 34〉 북한 민족유산보호부문 기관 조직도(추정)(신준영 외 3인, 『남북문화유산교류협력 실무 안내』, 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20, 172면)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그림 4〉 '민족유산보호국'의 추정 조직도



이렇게 변화해온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인 '민족유산보호국'은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중앙지도기관'이며 '전문부서'로 '과학연구기관들, 교육기관들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과 협력하여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발굴수집하고 그에 대한 심의등록, 평가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또한, '각 도, 시, 군인민위원회에 있는 민족유산보호를 위한 부서들과 해당 인민위원회아래에 있는 민족유산보호관리소, 명승지

관리소, 천연기념물관리소들의 민족유산보호사업과 중앙과 지방에 있는 력사박물관들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족유산애호월간사업'의[48] 계획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리하였다.

그리고 「민족유산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규정과 정책을 마련하고 '민족유산'에 대한 소개선전사업을 추진하고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49]

3. 문화재 보호관리의 구체화・제도화

앞서 살펴보았듯 북한은 해방 이후, 박물관 건립 및 문화재 보호법제의 반포, 문화재 보호관리기관의 수립 등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1947년에는 전국의 사찰에 대한 문화재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대장을 작성하고 사찰에 '책임숙직원'을 배치하는 등 개별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였다.[50] 이 시기에는 '락랑시대고분'이나 '안악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등이 이루어졌고, 당시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는 발굴조사인력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949년에는 관음사・동명관 등을 비롯한 '고적'에 대해 '중수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일련의 문화재 조사와 관리, 보수 등의 활동은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의한 고의적 파괴'에 의해[51] 훼손된 문화재를 확인하고 복구하는 의미를 가졌다.

이후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황폐해진 상황에서 박물관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피해를 당하였다.[52] 이에 따라 북한은 1953년 2월 18일 내각 결

48) '제65조 (민족유산애호월간),' 『北韓法令集 下』, 국가정보원, 2020, 580면.

49)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자료에 서술된 내용과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의 홈페이지에 설명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MINATION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3, pp. 198-199;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기금소개-지도기관과 련관단위들,'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홈페이지, http://www.naenara.com.kp/sites/national/(2021. 5. 1. 검색)].

50) 「민주 발전된 제반 문화시설, 북조선인민위원회 사회교육의 약진상」, 『민주조선』, 1947. 8. 13.; 김광운,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14(1947.08.08~1947.09.17)』,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 2018, 130-132면 재인용.

51) 『朝鮮中央年鑑—1950年版—』, 朝鮮中央通信社, 1950, 365면.

52) 「미제 원쑤들이 파괴략탈한 민족문화 유물들을 재정리」, 『로동신문』, 1951. 8. 21.; 「개성 지

정으로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를 '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로 변경하고 기구 정원을 충원하였으며,[53] 1954년 3월에는 내각지시로 《문화유물 및 천연기념물보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하달하여[54] 문화재 보호관리에 노력을 기울였다. 1954월 8월 2일 내각 지시로 「각종 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어[55] 문화재의 조사와 평가 및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 내용은 현재까지 이어져 「민족유산보호법」에도 반영되어있다(〈표 2〉 참조).[56]

1953년 '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로 변경된 중앙 문화재 보호관리기관의 여러 역할 중 문화재 조사·수집과 관리 측면에서 특이점은 그 대상에 '혁명유산'의 범주로 볼 수 있는 '해방 투쟁사적 관계되는 자료'가 포함된 것이다.[57] '국립청진력사박물관'에서는 '력사유물의 발견 수집 사업'을 진행하였고, 더불어 '항일 애국렬사의 유가족들과 조국 해방 전쟁'의 영웅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였다.[58] 물론, 당시에 개편된 '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와 그 지도의 대상인 각지의 '력사박물관'은 '물질문화유물'에 대한 수집과 관리, 보존과 민속자료 조사 연구사업 등이 주된

구의 문화 유물 보존 사업」, 『로동신문』, 1952. 4. 28.; 「천추에 잊지 못할 미제의 야수적 만행 력사적 유물들을 파괴 소각」, 『로동신문』, 1952. 6. 19.

53) 「조선 물질 문화 유물 조사 보존 위원회를 개편」, 『로동신문』, 1953. 3. 4.

54) 김연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연유산들을 더 많이 찾아내여 훌륭히 꾸리고 보호하기 위한 투쟁」, 『민족유산』 2019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8면.

55) 「각종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 유물을 보존 관리할 데 대한 내각 지시 발표」, 『로동신문』, 1954. 8. 9.; 김광운,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122(1954.08.04~1954.08.22)』, 코리아데이터 프로젝트, 2020, 228면 재인용.

56) 내각 지시 「각종 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할데 대하여」의 전문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로동신문』 기사로 그 내용을 유추하면 '건설 현장에서 유적과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소관 시·군 인민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군 인민위원회'는 '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추정해보면 발굴조사와 그 후속조치, 유물과 유적의 발견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및 필요한 대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7) 『로동신문』 1953년 3월 4일자 「조선 물질 문화 유물 조사 보존 위원회를 개편」에 따르면 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는 공화국 내각에 직속하며 '건조물, 물질 문화 유물과 력사에 관한 참고 자료, 고고학 및 민속학적 계층유물과 미술품, 공예품, 그림과 해방 투쟁사적 관계되는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이를 보존·관리한다.

58) 「유물 보존 수집 사업에 노력」, 『로동신문』, 1953. 9. 4.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59] 하지만 1946년부터 1947년에 걸쳐 '평양시박물관'을 '북조선국립중앙박물관'으로 격상하여 확충할 때도 소련군(붉은군대)과 김일성관련 자료 및 반일투쟁관련 자료, '민주건설'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였고,[60] 신의주, 청진 등 지방 박물관을 만들 때 평양 '중앙력사박물관'을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해방투쟁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이 지방 박물관에서도 꾸준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60년 초 『로동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문화 유물 보존 관리 사업'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사적지들'의 관리를 언급하고 있으며[61] '혁명 전적지를 비롯한 문화 유물 보존 사업'이 이루어졌다.[62] 1962년 12월 15일 혁명 박물관에서 열린 '전국 박물관 및 력사 유물 보존 부문 일'군 회의'에서도 '력사 유물 조사 관리 사업'과 함께 '혁명 전적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였다.[63] 1963년 6월 4일 '문화성'에서는 '《혁명사적지, 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전반적조사등록사업을 조직진행할데 대하여》를 시달하였고, 각 도(직할시), 시, 군(구역)인민위원회 문화국, 처, 부들에서는 《문화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조사요강》에 근거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모든 문화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전반적조사등록사업'을 진행하였다.[64]

뿐만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보존대책을 논할 때에도 '혁명사적지'가 '문화유물·명승·천연기념물'과 함께 언급되었으며 '도별로 조직된 전문 위원회

59) 「미제 원쑤들이 파괴략탈한 민족문화 유물들을 재정리」, 『로동신문』, 1951. 8. 21.; 「개성 지구의 문화 유물 보존 사업」, 『로동신문』, 1952. 4. 28.; 「고적 유물들을 수집 보존」, 『로동신문』, 1954. 1. 13.; 「고대 문화 유적을 탐사」, 『로동신문』, 1954. 3. 17.; 「문화 유물 보존에 노력」, 『로동신문』, 1954. 5. 23.; 「개성 력사 박물관에서의 문화 유물 수집 및 보존 사업」, 『로동신문』, 1954. 10. 4.; 「묘향산 특수 박물관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물과 명승 고적」, 『로동신문』, 1955. 9. 28.; 「국립 중앙 력사 박물관에서 유물 전시품들을 보충하고 진렬을 개편」, 『로동신문』, 1956. 4. 21.

60) 「중앙박물관에 보존할 력사적 진열품 모집」,《정로》, 1946. 8. 4.; 김광운,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4(1946.07.04~1946.08.27)』,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 2018, 393-394면 재인용.

61) 「문화 유물 보존 관리 사업을 일층 강화하자」, 『로동신문』, 1960. 4. 5.

62) 조선 중앙 년감 편집 위원회, 『조선 중앙 년감(1961년판)』, 조선 중앙 통신사, 1962, 227-228면.

63) 「전국 박물관 및 력사 유물 보존 부문 일'군 회의 진행」, 『로동신문』, 1962. 12. 17.

64) 김현, 앞의 책, 99-101면.

와 시, 군 또는 지역 단위로 조직된 답사단 성원들과의 련계 밑에 해당 지방의 혁명 사적지, 문화 유물, 명승지, 천연 기념물들을 재답사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세웠다.[65] '국토관리성'으로 문화재 보호관리가 넘어갔을 때에도 '혁명사적지'는 여전히 관리 범위에 있었다. '평양성의 애국적인 사적이나 강감찬장군의 구주대첩전적지'와 더불어 '강동의 김형직선생사적지와 함북도의 웅기 및 무산 지구혁명전적지'가 '문화유물보존연구소'의 조사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보존정비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였다.[66] 1966년 가을 함경북도 문화유물보존사업소에서는 문화재 복구 사업에 있어 이순신장군의 승전대비를 비롯하여 '웅기혁명렬사릉'도 함께 진행하였다.[67] 이는 법적인 문화재 보호관리범위(〈표 1〉 참조)와 실질적인 보호관리범위에서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혁명유산' 관리에 대해 역량이 갖추어져 있던 문화재 보호관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표 1〉 1945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 문화재 보호관리 법제의 문화재 개념과 정의

<table>
<tr><td rowspan="3">법제</td><td rowspan="3">1946년「보존령」</td><td colspan="2">1949년「물질문화유물 보존에 관한 규정」</td></tr>
<tr><td colspan="2">1954년「각종 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할데 대하여」</td></tr>
<tr><td colspan="2">1955년「명승지 및 천연 기념물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td></tr>
<tr><td rowspan="5">개념</td><td rowspan="2"></td><td colspan="2">물질문화유물</td></tr>
<tr><td rowspan="2">보물, 고적</td><td colspan="2">보물, 고적</td></tr>
<tr><td colspan="2">력사적 유적·유물</td></tr>
<tr><td>명승, 천연기념물</td><td colspan="2">명승지, 천연기념물</td></tr>
<tr><td>정의</td><td>「보존령」 제1조
-보물: 건조물, 전적, 고적, 회화,</td><td colspan="2">「명승지 및 천연 기념물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명승지 및 천연 기념물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전문</td></tr>
</table>

65) 「혁명 사적지와 문화 유물, 명승, 천연 기념물들을 더 잘 관리 보존할 대책을 강구」, 『로동신문』, 1963. 6. 18.
66) 「국보적가치가 있는 유적들을 옛모습대로 잘 꾸린다 각 도 문화유물보존사업소들에서」, 『로동신문』, 1966. 9. 20.
67) 「유적과 유물들을 정상적으로 정비보수한다」, 『로동신문』, 1966. 10. 1.

<table>
<tr><th rowspan="2">법제</th><th>1946년「보존령」</th><th colspan="2">1949년「물질문화유물 보존에 관한 규정」
1954년「각종 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할데 대하여」
1955년「명승지 및 천연 기념물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th></tr>
<tr><td>조각, 공예품 기타의 물건으로써 특히 력사의 증징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될 만한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
-고적・명승・천연기념물: 패총, 고적, 사지, 요지 기타의 유적, 경승토지 또는 동식물, 지질, 광물, 기타 학술연구의 자료가 될 만한 물건으로써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
[출처:「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法令公報』增刊 8, 北朝鮮人民委員會, 14면, 1947; 국립중앙도서관 해외한국관련기록물 "SA 2005 2/20 법령공보(1947-1948년)"에서 재인용(https://www.nl.go.kr/; 2022. 1. 5. 검색)]</td><td>은 공개되어 있지 않음.
-『로동신문』 기사에는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 중 '풍치상 또는 학술상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명승지 및 천연 기념물'이라는 표현과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 및 채집'과 같은 표현을 볼 때『보존령』과 유사할 것으로 보임.
(출처:「명승지 및 천연 기념물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승인할 데 대한 내각결정 채택」,『로동신문』, 1955. 12. 19.)</td></tr>
<tr><td></td><td colspan="2">「물질문화유물 보존에 관한 규정」 제1조
-'역사상의 기념물 및 학술연구상의 귀중한자료가되는 유적 건조물 회화(繪畵) 공예품 전적(典籍) 등 유물'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은 이를 고적 또는 보물로써 지정'함.
[출처:「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한 결정서(1949년 8월 2일 내각 결정 제110호) 별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 1949-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사무국, 324면, 1949; 국립중앙도서관 해외한국관련기록물 "Item #25 내각공보(1949, 1-17호, 2.10-12.28)"에서 재인용(https://www.nl.go.kr/; 2022. 1. 5. 검색)]</td></tr>
</table>

법제	1946년「보존령」	1949년「물질문화유물 보존에 관한 규정」 1954년「각종 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할데 대하여」 1955년「명승지 및 천연 기념물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각종 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할데 대하여」 -「각종 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할데 대하여」의 전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음. -『로동신문』 기사 내용에서 '각종 공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지하에 매몰되어 알려지지 않았던 고귀한 력사적 유적 유물들이 다수 출토 발견되고 있는데'라는 부분과 '공사 과정에서 선사 유적, 고분, 건축지 등 력사적 유적과 유물들을 발견하였을 경우'와 같은 것을 볼 때『각종 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할데 대하여』내에 '력사(적) 유적과 유물'은 '선사 유적, 고분, 건축지 등'으로 정의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출처:「각종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 유물을 보존 관리할 데 대한 내각 지시」,『로동신문』, 1954. 8. 9.)

1970년대 들어오면서 문화재 보호관리에서 '혁명전적지'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1972년 1월 3일 국가적인 심의위원회의 조직을 승인하였고[68] '전문분과는 고전문학, 현대문학, 외국문학, 음악, 무용, 미술, 력사유적유물, 풍속유산 등의 분과로 조직'되었다.[69] '력사유적유물분과'에서는 문화재의 평가를 담당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전국에 널려있는 유적유물을 현지에서 촬영, 실측, 고증한데 기초하여 유적유물의 이름, 시기, 용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력사적가치와 과학공예적가치'에 대하여 평가문건을 작성하여 국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70]

68) 김현, 앞의 책, 97면.
69) 같은 책, 98면.
70) 같은 책, 98면.

〈표 2〉 북한의 문화재 평가와 등록에 대한 법제 변천

	구법(舊法)			현행법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71]	2011년 「문화유물보호법」[72]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73]	2018년 「민족유산보호법」[74]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3장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제3장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와 등록
	6개조문	7개조문	7개조문	8개조문
심의 평가 조직	-국보문화유물·준국보문화유물: 정무원 -일반문화유물: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서 심의평가 -문화유물에 대한 심의평가를 위하여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 비상설력사유적유물심의평가위원회를 둠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에서 심의평가 -문화유산에 대한 심의평가를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에 비상설문화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둠	-민족유산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비상설로 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와 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 자연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둠 -해당 심의평가위원회는 과학, 교육, 문화, 체육, 보건, 민족유산보호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
심의 평가 신청	-문화유물의 평가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기관에 신청	-문화유물을 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평가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 제출 -문화유물평가신청서에는 문화유물의 이름, 소재지, 력사적 시기, 현 상태, 보존전망, 보존장소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진자료와 위치지정도를 첨부	-문화유산을 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산평가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에 제출 -문화유산평가신청서에는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력사적시기 및 유래, 현상태, 보존전망, 보존장소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진자료, 음성자료, 록화자료와 위치지정도 같은것를 첨부	-민족유산을 심의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제출 -신청서에는 민족유산의 명칭 소재지 력사적시기 및 유래, 현상태와 보호가치, 보존전망, 보존 장소, 비물질유산인 경우 그것을 보유하고있는자, 그와 련관된 수단과 도구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위치지정도를 비롯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

	구법(舊法)			현행법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71]	2011년 「문화유물보호법」[72]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73]	2018년 「민족유산보호법」[74]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3장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제3장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와 등록
	6개조문	7개조문	7개조문	8개조문
평가 방법	-력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국보문화유물·준국보문화유물·일반문화유물로 평가	-문화유물평가신청을 받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비상설력사유적유물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화유물의 력사적시기, 보존가치 같은것을 력사주의원칙에서 정확히 평가 -문화유물은 력사적의의와 조형예술적가치에 따라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 일반보존문화유물로 평가	-문화유산평가신청을 받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은 비상설문화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화유산의 력사적시기, 보존가치 같은것을 력사주의원칙에서 정확히 평가 - 문화유산은 력사적의의와 가치에 따라 력사유적인 경우 국보유적과 일반유적으로, 력사유물인 경우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로 평가 -비물질문화유산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과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평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민족유산에 대한 심의평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때에 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민족유산을 심의평가함 -물질유산은 력사유적인 경우 국보유적과 보존유적으로 력사유물인 경우 국보유물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로 평가 -비물질유산은 국가비물질유산과 지방비물질유산으로 평가, 이 경우 비물질유산 보유자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 -자연유산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로 평가
등록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 -일반문화유물: 지방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문화유물을 내각의 승인을 받아 등록 -이 경우 문화유물의 등록번호, 이름, 등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문화유산을 내각의 승인을 받아 등록 -이 경우 문화유산의 등록번호, 명칭, 등	-민족유산의 심의과정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민족유산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등록 -그러나 일반력사유물인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

	구법(舊法)			현행법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71)	2011년 「문화유물보호법」72)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73)	2018년 「민족유산보호법」74)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3장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제3장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와 등록
	6개조문	7개조문	7개조문	8개조문
		록날자, 소재지, 보호구역면적 같은 것을 정확히 기록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일반보존문화유물은 지방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	록날자, 소재지, 보호구역면적 같은 것을 정확히 기록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등록 -등록된 비물질유산보유자에게는 해당한 등록증서를 발급
변동 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 정형을 제때에 기록하고 해당 등록기관에 보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을 제때에 기록하고 해당 문화유물을 등록한 기관에 보고	-문화유산보존기관은 등록된 문화유산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을 제때에 정확히 기록	-
삭제 및 폐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을 폐기, 이관하거나 이름을 고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또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 필요	-	-	-민족유산의 보호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고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에서 삭제하고 폐기할 수 있음
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을 이관하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산을 이관하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민족유산의 명칭을 고치려 할 경우 내각

	구법(舊法)			현행법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71]	2011년 「문화유물보호법」[72]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73]	2018년 「민족유산보호법」[74]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3장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제3장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와 등록
	6개조문	7개조문	7개조문	8개조문
		이름을 고치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 필요	명칭을 고치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승인	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 필요
세계 유산 등록	-	-	-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우리 나라의 우수한 민족유산을 세계 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

이처럼 북한은 1970년대 문화재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조직하면서 문화재의 조사와 평가·등록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대상과 실질적 관리 대상을 일치시켰다. 또한, 위원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체계화되었으며 그 내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제도화를 추구하였다. 법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에서는 '문화유물'에 대한 평가와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6개 조문에 나누어 수록하였고, 이후 법의 개정을 통해 확장된 문화재 개념이 반영되었고 2018년 '수정보충'된 「민족유산보호법」에는 '심의평가위원회'의 조직, '심의평가신청서' 내용과 평가방법, 등록·삭제 및 변경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었다(〈표 2〉 참조).

4. 문화재 보호관리의 고도화 추구: 문화재 국제교류

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로동신문』, 1994. 4. 8.
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2012, 1079-1086면.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법률출판사, 2016, 52-59면.
74) 『北韓法令集 下』, 앞의 책, 570-581면.

해방 이후 북한은 '민족문화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문화재 보존으로 '일제와 미제의 만행'에 대처하는 민족의 수호자가 되었다. 전쟁 이후, 문화재의 수집과 발굴·복구 사업을 통해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및 최고지도자의 위대함과 정당함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하였으며,[75] '사회주의 건설' 아래 '당과 정부의 로선 및 정책을 실현함에 리로운 것, 전체 인민의 리익에 합치되는 모든 요소를 발견'하여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하였다.[76] 북한은 '민족문화유산 계승'을 위해 1970년대까지는 문화재의 조사·수집·평가 및 등록 과정을 조직화·구체화하였고, 주로 국내에서 '력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 전시와 책자 발간 사업을 통한 선전사업을 추구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국내뿐만 아니라 문화재 분야 국제교류를 통해 '전시회(전람회)'를 중심으로 해외에 '계승'된 문화재 '소개선전'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 이전에도 당시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알려진 사례는 많지 않다(〈표 3〉 참조).

〈표 3〉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문화재 국제교류

1956. 5. '전 련맹 민속학 학술 보고회'(모스크바)의 참석함. 출처: 「쏘련 민속학 학술 보고회에 참가할 과학원 대표 출발」, 『로동신문』, 1956. 5. 12. 「쏘련 민속학 학술 보고회에 참가하였던 과학원 대표 귀국」, 『로동신문』, 1956. 6. 4.
1963.~1965. 중국 동북지방 유적 발굴조사('사회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와 중국의 '고고학연구소 동북 고적 공작대'): 고조선 문화 규명에 노력함. 출처: 리주현·한은숙, 『조선고고학총서 1 총론』,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59면·166면
1966. '웰남 력사 박물관'에서 보내온 구석기 시대의 석기 모조품 전시함. 출처: 「웰남 력사 박물관과 총련으로부터 보내온 문화 유물들」, 『로동신문』, 1966. 1. 19.
1972. 일본 '다카마쓰 고분(高松塚)'의 국제합동조사단 참여함. 출처: 『조선중앙년감(1973년판)』, 조선중앙통신사, 1973, 261면 「韓國·北韓·日學者공동 다까마쓰고분 學術調査」, 『동아일보』, 1972. 10. 3.

75) 「고적 유물들을 수집 보존」, 『로동신문』, 1954. 1. 13.; 「문화 유물 보존에 노력」, 『로동신문』, 1954. 5. 23.; 「옛 모습 갖춘 문화 유물들」, 『로동신문』, 1955. 2. 21.; 「유적 유물 및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 사업을 강화하자」, 『로동신문』, 1955. 4. 6.

76) 김창일, 「문화 유산의 철저한 보존과 그의 옳바른 계승 발전」, 『로동신문』, 1956. 1. 8.

1972. 10. 10.~10. 15. 도쿄에서 열린 '고구려벽화무덤자료전시회'에 자료를 제공함.
출처:「고구려벽화무덤자료전시회가 도꾜에서 진행되고있다」,『로동신문』, 1972. 10. 13.

1980. 5.~7. 동유럽에서 북한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선전'하는 '전람회' 개최: '국보유물들을 비롯한 많은 유물자료들로 편성된 비교적 규모가 큰 것'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연 '대외전람회'라고 언급함.
출처: 김현, 앞의 책, 228면.

1984. 9. 파리 유네스코 청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주간행사'의 일환으로 '고구려벽화무덤 및 민속전람회'를 개최함.
출처: 같은 책, 231면.

1985. 11. 프랑스 니스에서도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를 개최함.
출처:「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프랑스에서 진행」,『로동신문』, 1985. 11. 28.

1985.~1986. 오사카와 고베, 후쿠오카, 도쿄, 교토 등에서 '고구려문화전'을 진행함: 도쿄에서는 '국제토론회'도 함께 열려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의 내용과 그 우수성, 고구려와 일본문화의 관계문제들에 대하여 광범한 의견'을 교환함.
출처: 김현, 앞의 책, 231-232면.

1980년대 중반부터는 국제기구와의 교류도 추진하였다. 1985년에는 '국제기념비 및 명승지리사회'와[77] '국제박물관리사회'에[78] 정식으로 가입하면서[79] 국제기구와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또한, 1989년에는 '생물권보전지역(Man and the Biosphere)'으로 '백두산'이 지정되었다. 북한은 이에 대해 해외에 북한의 문화재를 '소개선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재보존관리에서 나서는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평하였다.[80]

이렇게 시작된 국제교류는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9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고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하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제출하였다.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네스코와의 교류를 통해 '고구려벽화무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하였고 2002년에 제출한 신청서는 2003년 반려되었다(〈표 4〉 참조).

77)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인 '이코모스(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로 추정된다.
78)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79) 김현, 앞의 책, 237-238면.
80) 같은 책, 237면.

이후, 북한은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였고 2004년에 북한은 중국과 함께 각각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고구려벽화무덤'은 북한의 첫 '세계유산'이 되었다.

〈표 4〉 북한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구려벽화무덤' 등재를 위한 교류

1999. 유네스코 관계자 북한 방문: '협조관계를 발전'
1999. 10. 4.~10. 8. '문화 및 자연유산보존에 관한 민족토론회'를 평양·남포에서 진행함.
2000. 세계유산 잠정목록 제출
2000. 5., 2000. 7. 유네스코 관계자 방북 '고구려벽화무덤'과 관련한 사진전시회에 참석함.
출처: 김현, 앞의 책, 237-240면.
2002 '고구려벽화무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첫 신청서를 제출함.
2003. 3. '이코모스'에서 '중국내 고구려 무덤들을 비교연구한 후 중국과 고구려 유적을 공동 등재할 것'을 유네스코에 권고, 북한이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고구려벽화무덤'을 '반려'함.
출처: 신미아, 「북한과 중국내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 관련 주요 쟁점 연구」, 『高句麗渤海研究』 40, 고구려발해학회, 2011, 90-92면.
2004. '고구려벽화무덤' 중국과 함께 각각 세계유산으로 등재함.

'고구려벽화무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이래로 북한은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통한 국제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표 5〉 참조). 이 과정에서 북한은 '세계유산센터'로부터 관련 인력의 교육과 잠정목록 및 '고구려고분군·개성력사유적지구·금강산력사유적지구'의 등재신청 및 관리계획 준비를 위해 인적 및 물질적 지원을 받았다.[81] 더불어 '북한의 고구려 고분과 벽화 보호(Safeguarding Koguryo Tombs & Mural Paintings)'를 위해 2001년부터 유네스코와 남한의 문화재청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세계유산센터'를 통해 '북한의 고구려 고분 보존과 역량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82] 2001년부터 총 3단계(1단계: 2001년~2003년, 2단계: 2003년~2006년, 3단계: 2008년~2014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2019년부터 4단계 사업이 추진

81) International assistance, http://whc.unesco.org(2021. 9. 25. 검색).
82) Safeguarding Koguryo Tombs & Mural Painting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whc.unesco.org(2021. 9. 25. 검색).

되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와의 교류는 무형문화재로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200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에 가입하면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북한의 법적 보호관리가 기대되었다. '세계유산'이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문화재를 등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문화재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북한의 법적보호는 예견된 일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2014년 12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에 제출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기보고'를 통해 "2012년 8월에 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반영하기 위해 보완과 개정"을 하였다고 밝혔다.[83]

〈표 5〉 북한의 유네스코 등재 유산 목록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기록유산
2004 고구려벽화고분 **2013** 개성력사유적지구	**2014** 아리랑 민요 **2015** 김치담그기풍습 **2018**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남북공동 등재)	**1989** 백두산 **2004** 구월산 **2009** 묘향산 **2014** 칠보산 **2018** 금강산	**2017** 무예도보통지
〈잠정목록〉 평양력사유적지구 칠보산 구장동굴 묘향산유적지구 금강산력사유적지구	* 참고사항 **2020** 조선옷차림풍습 등재 실패 **2021** 평양랭면풍습 신청		* 참고사항 **2016** 무예도보통지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 등재

북한은 '비물질유산'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세계유산'

83) Periodic reporting on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ttp://ich.unesco.org(2021. 9. 25. 검색).

등재를 준비할 때와 유사하게 인적·물적 지원을 받았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를 통해 인적지원이 이루어졌으며,[84] '인류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에서는 2018년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체 기반 목록 작성을 위한 역량강화 및 등재신청서의 정교화'와 2019년 '전통고려청자 제작 역량강화'를 위해 북한에 지원을 결정하였다.[85]

이처럼 북한은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재 보호관리에 있어 인적·물적 교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북한의 '비물질유산' 목록 작성 항목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서 항목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었고,[86] 북한 내에서 '비물질유산'에 대한 등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2012년부터 2021년 초까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112건,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16건이 등록되었다.[87]

북한은 국제기구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교류를 진행하였다. 1990년부터[88] 시작되었으며 문화재 발굴 및 조사가 주된 분야이다. 2000년대 들어와 남한과도 문화재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령통사복원사업'이나 신계사 발굴조사 및 복원사업, 평양일대 고구려 유적 학술조사와 같은 조사사업과 개성공단부지 남북공동 발굴조사·'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84) 2011년 '정부 대상 보호 인식 제고 워크숍,' 2013년 '2003년 협약이행을 위한 훈련워크숍,' 2016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위한 훈련워크숍,' 2018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및 추천문건작성 훈련워크숍'; Meeting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organized by UNESCO, https://ich.unesco.org(2021. 9. 25. 검색);「조선에서 유네스코강습 진행」,『조선의 오늘』, 2018. 10. 4., http://www.dprktoday.com(2019. 3. 18. 검색).

85)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ject, http://ich.unesco.org(2021. 9. 25. 검색).

86) 이우영·남보라, 앞의 논문, 177-181면 참조.

87) 2021년 초까지 북한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제출한 신청서와『조선중앙년감』및『로동신문』등을 토대로 확인하였다.

88) 1990년대에는 주로 러시아와 발해유적에 대해 공동 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일본 다이쇼대학(大正大學)에서 '령통사'를 발굴조사하였다. 한편,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청진 부거리 일대 발해 유적 조사와 발굴·고구려 벽화 무덤 발굴 조사·평양지역 낙랑 무덤 발굴 조사·고구려 성곽 조사·회령지역 발해 유적 조사와 발굴'에 대해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는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발행되어 남한의 지원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문화재 교류성과를 출판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온 국보들' 전시・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사업・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이 진행되었다.

2010년 이후 북한은 유럽 국가와도 문화재 교류를 진행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과의 협력이다. 2010년부터 개성성과 남대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14년에는 평양민속공원 내의 조선민속박물관에서 '조선-프랑스 개성성공동조사발굴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까지 개성과 평양을 오가면서 전시회 도록과 보고서 작업을 진행하여 2017년에는 전시회 도록을 발간하였다. 또한, 주기적으로 캄보디아 시엠레아프(Siem Reap)에서 EFEO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고학 훈련과정을 진행하였다. 2019년부터 개성 남대문 출토 도자기 연구와 고려왕릉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나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는 중단되었다.[89]

독일과는 개성 일대의 사찰 보존에 대한 교류를 진행하였다. 2014년 10월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주조 도이칠란드련방공화국대사관' 사이에 체결된 '개성시 력사유적보수협조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안화사를 '개건보수'하였다.[90] 이후 2017년 4월에 추가로 보수협조가 이루어져 관음사의 '개건보수'가 진행되었다.[91]

유럽 국가들이 주로 '개성력사유적지구'와 관련하여 교류를 진행한 것과는 다르게 2019년에는 평양의 '련광정'이 '네데를란드 클라우스왕자재단'의 지원으로 보수가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92]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교류협력이 진행되지 않아 문화재 교류 지역의 확대 여부는 확인

89) 민족유산보호지도국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 『조선-프랑스 개성성공동조사발굴전시회(*La forteresse de Kaesong : catalogue de l'exposition sur les recherches archéologiques conjointes de la forteresse de Kaesong)*』, Atelier des Cahiers, 2017; EFEO의 서울 블로그(https://www.efeo.fr/blogs.php?bid=17)에 소개된 개성사업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90) 「고려시기의 력사유적 안화사 개건보수」, 『조선중앙통신』, 2015. 7. 15., http://www.kcna.kp(2016. 8. 8. 검색).

91) 「고려시기 력사유적인 관음사 개건보수」, 『조선중앙통신』, 2018. 2. 7., http://www.kcna.kp(2019. 3. 18. 검색).

92) 「민족유산보호를 위한 국제적교류」, 『서광』, 2019. 9. 24., http://sogwang.com/(2020. 3. 23. 검색, 2021. 9. 25. 검색불가).

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은 문화재 국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28일에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을 설립하였다.[93]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리사회'가 기금의 최고 결정기관이며 기금사업은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서기국' 맡아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이다.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 비정부단체들, 외국의 개별적인사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을 통한 새로운 교류형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부내용은 '력사자료, 유물, 물자, 자금 등'이며 문화재 보호관리의 전 영역에 걸쳐 기부분야가 구성되어있다. 그 가운데 특정 '력사유적발굴대상'을 지정하여 발굴조사 지원을 할 수 있고, 기부자 우대로 지원한 발굴조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특이한 점이다. 북한의 문화재 교류협력에 있어 최근까지 이루어진 사업 중 비중이 높은 것이 모두 발굴조사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교류가 재개되면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민족유산보호국' 산하의 '조선민족유산보존사'도 2014년 이후 국제교류에 있어 주목해야 할 기관이 되었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2014년 김정은 담화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를[94] 통해 '민족유산보호지도국('민족유산보호국'의 전신)'과 함께 강조된 기관으로 「민족유산보호법」 내 조직운영을 조문으로 보장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진 기관이다. 전신인 '조선문화보존사'는 문화재의 '조사・등록・평가'사업을 뒷받침하고, '소개선전'을 위한 각종 문화재 관련 출판을 담당하는 '출판선전기지'였다. 또한, 각종 문화재의 복구・보존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과학연구기지'였다.[95] 2014

93)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설립」, 『조선중앙통신』, 2018. 7. 12., http://www.kcna.kp(2019. 3. 19. 검색); 「겨레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통일신보』, 2018. 1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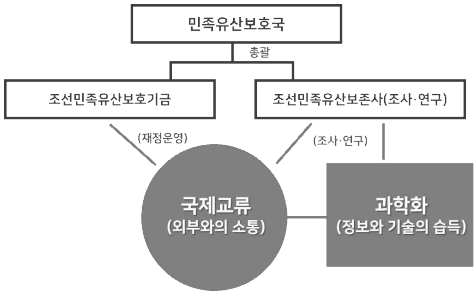
94) 김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4년 10월 24일』,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95) 조선문화보존사,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2021. 9. 25. 검색); 허태선,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자랑찬 길을 걸어온 조선문화보존사」, 『민족문화유산』 2007년 제4호, 200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4-15면.

년 김정은의 담화 이후,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기존 역할뿐만 아니라 개성 일대 고려왕릉 발굴조사를 비롯한 여러 유적의 발굴조사 사업도 담당하였으며 유형문화재를 넘어 무형문화재와 자연문화재에 대한 '민족유산보호사업의 과학연구중심, 자문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문화재 국제교류로 그 영역을 넓혀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과의 교류에서도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함께 참여하였고, 제8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에서도 과거와 달리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발굴대와 함께 조사단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문화재 3D 스캔 기술을 익히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96] 이런 경험을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97]

〈그림 5〉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과 '조선민족유산보존사'를 통한 국제교류 흐름 추정도



96) 북한은 2015년에 열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출토유물 남북 동시 전시회'를 통해 3D 스캔 자료를 활용한 전시자료를 경험하였다. 또한,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을 통해서 정밀성은 떨어지지만 3D 장비 없이 디지털카메라로 작업하는 '포토스캔' 기술을 습득하였고, '포토스캔' 기술의 활용을 2018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97) 2020년 10월 '남포시 룡강군'에서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포토스캔' 기술을 활용한 3D 발굴현장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는 북한이 문화재 교류를 통해 얻은 경험을 북한 내부에서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남포시 룡강군에서 고구려벽화무덤 발굴, https://www.youtube.com/watch?v=AVz-Zkh1UGg(2020. 10. 23. 검색).].

〈그림 6〉 북한의 문화재 국제교류를 통한 효과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보인 행보를 볼 때, 2014년 김정은 담화에서 강조하였던 '민족유산보호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할 것'과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사업을 벌릴 것'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민족유산보존사'와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을 매개로 진행할 것이 예상된다. 문화재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은 재정운영을 담당하고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민족유산보호국'은 이 국제교류의 총괄운영을 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5〉 참조).

이처럼 북한은 문화재 국제교류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고, 북한 문화재의 '소개선전'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세계적 추세에 맞게'[98] 문화재 보호관리를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그림 6〉 참조).

5. 결론

북한은 국가 수립 초기부터 문화재 보호관리기관을 조직하였고, 1970년대 '문화보존총국'을 수립하면서 중앙 문화재 보호관리기관을 확립하였으며 이 기관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앙 문화재

98) 김현, 앞의 책, 245면.

보호관리기관의 명칭은 자주 변경되었지만, 현재는 '문화성 민족유산보호국'에서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중앙 문화재 관리조직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1960년대까지 문화재 조사와 수집 및 보존관리의 대상에 '물질문화유물'뿐만 아니라 '해방투쟁사적 자료' 및 '항일 빨치산 혁명사적지'가 포함되어 법적 보호 대상과 실제 관리 대상에 불일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1970년대에 '심의위원회'와 '문화보존총국'을 조직하면서 실무적 관리대상이 명확해졌으며 「문화유물보호법」과 「문화유산보호법」을 거쳐 현행법인 「민족유산보호법」을 통해 문화재 조사와 평가·등록의 대상 및 절차·방법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제도화를 추구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힘을 쏟았던 문화재 국제교류는 문화재의 '소개선전'뿐만 아니라 외부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였고 문화재 보호 관리를 고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국제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꾸준히 '비물질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과거를 보면 북한의 문화재 국제교류는 물적·인적 교류를 통한 새로운 정보와 기술 유입의 기회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99] 하지만 2020년 '조선옷차림풍습'의 등재 좌절처럼 부정적인 경험이 반복된다면 북한의 문화재 보호관리 방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북한의 문화재 국제교류 및 남북 문화재 교류는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지금까

99)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화재 국제교류보다는 국내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족유산보호국'이 총괄하고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과 '조선민족유산보존사'를 활용한 국제교류 추진은 유효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그 기능이 강화된 후 국제교류를 통한 경험을 토대로 문화재 보호 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는 중심이며, 국제사회와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내 사업에 집중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문화재에 대한 '자료기지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과학원'과 연계하여 '민족유산지리정보체계프로그람' 개발하였고, '민족유산보호부문 일군들을 위한 문답집' 발간과 단청색감연구사업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은 설립된 후 특별한 대외 활동을 보인 것이 없지만 계속해서 북한 내 문화재 관련 소식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어 기관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 북한의 '민족유산보호국'이 보인 행보를 토대로 향후 재개될 때를 대비하여 '인적교류'와 '문화재 보호 관리의 과학기술교류'로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해방 이후부터 약 70여 년간 지속한 북한의 문화재 보호관리기관을 파악하기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민족유산보호국'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확립된 기관의 특성을 파악하여 북한의 문화재 보호관리정책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남북 문화재 관리제도의 통합 연구에서 조직통합까지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북한의 문화재 보호관리기관에 대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기관의 변화에 집중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민족유산보호국'의 주요 업무인 '력사박물관' 지도사업이나 '발굴조사'의 관리, '보수 및 복구개건사업,' 지방관리체계 등은 공백으로 남아있다. 더불어 국내외적 상황과 환경, 최고지도자의 영향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여 북한이 추구하는 민족문화수호가 어떤 의미인지, '조선민족제일주의' 및 '국가제일주의'와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로동신문』
『민주조선』
『旬刊北朝鮮通信』
『法令公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
『정로』
『통일신보』.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 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2020.
『김정일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전통에 대하여』(2판),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문화유물』 1,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 1949.
『北韓法令集 下』, 국가정보원, 20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법률출판사, 2016.
『전화번호책』, 체신청, 2002.
『전화번호책』, 체신청, 발행년불명.
『朝鮮中央年鑑—1949年版—』, 朝鮮中央通信社, 1949.
『朝鮮中央年鑑—1950年版—』, 朝鮮中央通信社, 1950.
『조선중앙년감(1973년판)』, 조선중앙통신사, 1973.
김광운,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4(1946.07.04~1946.08.27)』,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 2018.
_____,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7(1946.11.29~1946.12.31)』.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 2018.
_____,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14(1947.08.08~1947.09.17)』,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 2018.
_____,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122(1954.08.04~1954.08.22)』,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 2020.
김연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연유산들을 더 많이 찾아내여 훌륭히 꾸리고 보호하기 위한 투쟁」, 『민족유산』 2019-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8-10면.
김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4년 10월 24일』,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김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독고철남,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16-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7-10면.
리상일,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보호관리사업을 잘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18-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6-8면.
리주현 · 한은숙, 『조선고고학총서 1 총론』,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조선 중앙 년감 편집 위원회, 『조선중앙년감(1956년판)』, 국제생활사, 1956.
_____, 『조선중앙년감(1957년판)』, 조선 중앙 통신사, 1957.

_____, 『조선 중앙 년감(1961년판)』, 조선 중앙 통신사, 1962.
허태선,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자랑찬 길을 걸어온 조선문화보존사」, 『민족문화유산』 2007년 제4호, 200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4-15면.
『北韓 遺物·遺蹟 現況』, 中央情報部, 1973.
경북대 산학협력단, 『남북한 문화재관련 법제통합연구』, 법제처, 2013.
김유진, 「북한의 통치이념 변화에 따른 문화유산정책 연구」, 한국전통문화대 대학원 문화유산학과 문화재법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2016.
김응환·전영선,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연구—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법령을 중심으로—」, 『민족학연구』 2, 한국민족학회, 1997, 179-219면.
김현우·이선복,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 연구—지방의 유적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재』 52-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4-17면.
남궁승태, 「남북 통일을 대비한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2, 195-227면.
남보라·서순복,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법학논총』 21-3, 조선대 법학연구원, 2014, 191-224면.
남보라, 「북한 민족유산의 유형과 법제」, 『북한의 문화·자연유산과 남북교류협력 이해하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1-35면.
文化財管理局 編, 『北韓文化財實態와 現況』, 文化財管理局, 1985.
朴相哲·金昌奎, 『北韓의 文化財保護關係法制』, 한국법제연구원, 1995.
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동향 연구」, 『무형유산』 7, 국립무형유산원, 2019, 6-29면.
_____, 「북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양상—국악 분야를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 43, 국립국악원, 2021, 43-70면.
송민선,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 『문화재』 50-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94-115면.
신미아, 「북한과 중국내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 관련 주요 쟁점 연구」, 『高句麗渤海研究』 40, 고구려발해학회, 2011, 83-107면.
신준영 외 3인, 『남북문화유산교류협력 실무 안내』, 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20.
신현욱·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한국민요학』 41, 한국민요학회, 2014, 127-151면.
楊昌錫·任孝宰,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國土統一院調査研究室, 1984.
오양열,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북한연구』 6, 명지대 북한연구소, 2003, 161-199면.
이규창, 「북한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연구—북한 문화유물보호법과 남한 문화재보호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0년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0, 117-154면.
이우영·남보라, 「새로운 접촉지대의 모색, 무형문화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씨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2-3, 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 2019, 174-199면
이현경·손오달·이나연,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한국의 문화재 개념 및 역할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비판」, 문화정책논총 3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5-29면.
정은찬·문철훈, 「남북 문화유산의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문화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인

문사회과학연구』 3-1, 중원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91-113면.
鄭在鑮, 「남북한 문화재관리정책의 비교」, 『미술사학』 3, 한국미술사교육학회, 1989, 8-54면.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통일인문학』 77,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019, 363-395면.
조우찬, 「북한 김정은 시대 문화재정책의 특징: 무형문화유산의 부각과 지향성을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논문집』, 통일부, 2019.
지병목, 「「문화유물보호법」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유산」, 『문화재』 3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39-67면.
崔鐘庫,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남한의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북한법연구』 1, 북한법연구회, 1997, 60-70면.
編輯部, 「資料 北韓所在 文化財一覽」, 『北韓』 82, 북한연구소, 1978.
하문식, 「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남북 교류」, 『정신문화연구』 3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279-305면.
민족유산보호지도국·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 『조선-프랑스 개성성공동조사발굴전시회(*La forteresse de Kaesong : catalogue de l'exposition sur les recherches archéologiques conjointes de la forteresse de Kaesong*)』, Atelier des Cahiers, 201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MINATION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3.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서광, http://sogwang.com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http://www.naenara.com.kp/sites/national
조선의 오늘, http://www.dprktoday,com
조선중앙통신, http://www.kcna.kp
EFEO의 서울 블로그, https://www.efeo.fr/blogs.php?bid=17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 https://whc.unesco.org/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홈페이지, https://ich.unesco.org/
남포시 룡강군에서 고구려벽화무덤 발굴, https://www.youtube.com/watch?v=AVz-Zkh1UGg(2020. 10. 23. 검색).

【Abstract】

Study o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 Management Institutions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changes of 'National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Nam, Bo-Ra*

This study summarized the process of which the central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management organization is being established by concentrating on the transition of the 'National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which is a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institution.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e, North Korea organized a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management institution, and established the central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management institution through the forming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in the 1970s after passing through a transition period. Although the name of the management institution was frequently changed, its major tasks showed a tendency of being embodied and institutionalized. Moreover, basic tasks such as collecting, evaluating, registering, and managing cultural heritage were also supported by the laws.

Meanwhile, North Korea has exerted to register the cultural heritage to the UNESCO heritage from around 2000 to the latest and conducted the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as well as a project called 'Introduction & Propaganda' of North Korean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exchanges between two Koreas and those with European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which continued to immediately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In this process, it was an opportunity to accept 'advanced technologies that meet global trends.'

Keywords: Cultural heritage of North Korea, National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The Korea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Fund, The Korea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Agency,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National Heritage.

* Ph.D. Candidat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접수일: 2021.12.31. ‖ 심사일: 2022.01.11. ‖ 게재확정일: 2022.02.24.